

la1.27.7

67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 활동 자료집

(1999.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67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 활동 자료집 (1999.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67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 활동 자료집

(1999.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 보고서

국제인권위원회 참가문, 보고서

【 1 부 】

1. 참가보고서의 제출과 그 이후의 제내바활동까지의 경과

참가보고서의 제출은 우리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1981년 12월 15일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 제 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참가보고서 - 박찬운

1981년 12월 15일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출된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¹⁾ 참가 보고서²⁾

국제연대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 부 1 】

1. 반박보고서의 제출과 그 이후의 제네바활동까지의 경과

반박보고서의 한글본이 늦게 작성되고 이에 따른 번역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결국 반박보고서는 99년 7월말 경 완성되었다. 원래 99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열린 66차 회의의 실무회의에서 67차 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하여 그 전에 반박보고서가 제출되어야만 효과가 크다고 하는 연락이 제네바에서 온바 있다. 우리는 이 일정에 맞추어 반박보고서를 완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정은 역부족이었다. 완성된 반박보고서가 나오기 힘들면 실무회의가 한국정부에 보낼 질문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질문서라도 보내는 것이 좋다는 말에 본인이 이의 책임을 맡았으나 시간상 위의 실무회의 일정에 우리의 질문서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서 작성작업은 막판 과정에 있는 우리의 반박보고서의 마지막 파트(4부)를 장식케 하였고 금번의 제네바 활동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초 우리는 반박보고서를 제네바의 유엔 인권사무국에 보냈다. 18명의 인권위원들이 67차 회의에서 얼마나 이 반박보고서를 보고 오느냐가 한국보고서의 검토일정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검토회의가 되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다.

9월이 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67차 회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은 제네바에 누구를 파견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하였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네바에서 활동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문제이었다. 참가대표단은 우선 반박보고서 작성을 책임지었던 국제연대위원장이 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졌고 8월 중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전임 국제연대위원장 한택근 변호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현지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정도로 원활한 제네바 활

1) 한국에서 이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유엔인권위원회 혹은 유엔인권이사회등으로 불리는데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 필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가장 정확한 번역어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인권위원회 혹은 위원회라고도 부른다.

2)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첫째는 67차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우리 민변이 어떻게 준비하고 활동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보고를 통해 향후 5년 후의 차기 검토회의와 다른 인권규약의 검토회의 시 최선의 NGO활동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얻은 노하우를 정리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는 데 있다.

동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또 한명의 회원이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되었다. 제네바 활동에 이미 몇 번의 경험이 있는 김선수 변호사가 추천된 것이다. 이로서 제네바 활동을 책임질 회원으로는 3인이 결정된 것이다.

9월초에 FIDH라는 단체로부터 KOHRNET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67차 회의에서 있을 한국보고서 검토 시에 한국의 NGO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제안은 한국에서 한 명의 대표를 제네바에 파견해주면 그들이 제공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2-3일 교육을 받게 한 다음 본격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비와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이 상당히 타당하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어차피 우리는 유엔의 협의자격이 없는 로칼NGO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명도 있는 국제적 NGO와 연대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FIDH의 제안은 적기에 온 뜻밖의 국제적 연대이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인은 FIDH의 담당자인 Eleni Petroula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제네바 활동을 준비해갔다.

FIDH는 우선 우리에게 이번 회의에서 이슈화할 인권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판단되었다. 한국보고서의 검토일정이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칫 검토회의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하여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다. 짧은 시간내에 한국의 인권문제가 인권위에서 생산적으로 토론되기 위해서는 쟁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우리의 반박보고서의 상당부분이 거론되지 않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한국의 인권문제 중 최대쟁점을 간단히 정리하여 주고 한국대표단에게 질문할 것을 사전에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 우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최종권고안의 초안을 만들어 이를 직접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로비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 하에 김선수회원과 본인은 우리가 제출한 반박보고서의 내용중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간단한 문건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0개의 주요쟁점을 선정하여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부치고 이어 각 쟁점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최종권고안의 초안을 만들었다(10대 쟁점과 그 질문내용 및 권고안은 자료편 영문문건 참고). 완성된 이 권고안(Draft Recommendations)는 곧바로 E-메일을 통하여 FIDH에 보내졌고 동 단체는 이 문건을 관련 인권NGO와 유엔인권사무국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로비활동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상대로 한 가장 적극적인 로비활동은 NGO가 위원들을 초청하여 이슈를 설명하는 런치브리핑임을 알았다. 이것은 NGO가 위원회 회기 중에 자신들과 관계 있는 안건을 다루기 전에 위원들을 점심시간에 초청하여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 시간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대표들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NGO 대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NGO대표들은 위원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FIDH에서도 제안하였고 한국인으로서 현재 인권사무국(High Commissioner Office for Human Rights)에서 일하는 이완희씨도 그러한 정보를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FIDH에 런치브리핑을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동단체는 우리의 제안대로 이 런치브리핑을 우리가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주선을 끝내고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0월21일 점심. 바로 한국보고서가 검토되는 전날에 날짜를 잡은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일정에 혼신의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2. FIDH에 관하여

FIDH는 영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의 불어명의 이니셜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인권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다. 이 단체는 현재 AI(Amnesty International)에 버금가는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인권단체 중의 하나이다. 1922년에 세계최초로 국제적 인권단체로 창설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단체이었으나 1924년에 이미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그 활동의 다른 한 축으로 삼아 양권리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AI가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면 이 단체는 불란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현재 70개국 이상의 나라에 89개의 회원조직이 있으며 5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으며 5개의 도시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그 중의 하나가 제네바임) 그 운영은 국제집행위원회(International Board)가 맡고 있다. 현재 이 단체의 총재는 Patrick Baudine이며 사무총장은 Antoine Bernard이다.

FIDH는 유엔과 유네스코에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인권위원회와 유럽이사회에서는 옵저버자격을 가지며 활동을 한다. 이 단체는 각국의 지부와 협력하여 각종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로칼NGO들을 지원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담당한다. 특히 제네바의 FIDH는 최근에 자유권규약등의 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검토회의 참가하는 로칼 NGO들에게 재정적 보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 메카니즘을 이해케하고 효율적인 로비활동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민변의 인권위원회 참관단이 FIDH의 협조를 받은 것도 이런 FIDH의 활동 중의 하나이었다. FIDH는 본인에게 여비와 체제비를 제공하였으며 체류 중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다.

3. FIDH의 협조와 회의 전 로비활동

10월20일

우리 대표단은 FIDH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 20일부터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우리는 20일 오전 인권고등판무관실을 찾았다. 판무관실은 원래 유엔본부(palace of nations)에 있었으나 2년 전 레만호수 변의 독립건물을 얻어 이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시아담당관 스테파니(Stepany)를 만나 약 30여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번 회기가 시간상 한국의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만든 주요인권문제요약문과 반박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반박보고서는 우리가 8월초에 보냈으나 담당관은 아직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주로 일본과 중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었다. 요약본도 얼마 전에 FIDH에서 보냈다고는 하나 아직껏 본적이 없다는 것에서 그러한 정서를 강력히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하더라도 우편으로 백 번을 보내는 것 보다 한번 만나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담당관이 비록 우리의 반박보고서와 요약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서울NGO대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왔다. 인권교육에 대해 질문을 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비록 지난 10여년 간 한국의 인권상황이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담당관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였다.

점심시간 무렵 우리는 유엔본부의 출입을 허가하는 Security Office에 가서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이것을 Accreditation이라고 하는 데 이미 FIDH가 우리를 대신하여 NGO대표로서 67차 인권위원회의 참관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었으므로 간단히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모로코의 검토회의를 참관하였다. 22일의 한국보고서 검토회의를 보다 정확하게 참관하기 위하여 회의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메카니즘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회의장의 모습은 장방형의 방에 의장이 있는 헤드테이블과 위원과 유엔관련기구의 관계자가 착석하는 3열의 테이블, 그리고 NGO 참관단을 위한 두열의 자리(2층에도 약간의 NGO 켈러리가 있다)가 의장석을 바라보며 있었다. 시간이 되자 NGO 석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찼고 위원석은 드문드문 비어 있었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거의 차기 시작하였다. 18명의 위원중 16명이 참석한 것 같았다. 회의의 시작은 모로코 대표(대사)가 간단히 보고서의 대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약 15분 설명이 있자 곧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답변은 이미 해당국에 보낸 질문서에 입각하여 준비된 것이었다. 전화기인 66차 실무회의에

서 해당국에 질문한 것이 답변되는 것이었다. 준비된 답변이 끝난 다음 위원들의 개별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회의 메카니즘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약 1시간 참관하고 이어 프레스 룸에 가서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입수하였다. 3층의 프레스 룸(C-329)에 가면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회의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인권위의 경우 회기가 열린 10월 18일 직전부터 매일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었다.

10월21일

오전에 Eleni의 안내로 우선 APT(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Torture)를 찾았다. 이 단체는 23년 전 어느 은행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국제적 인권단체이다. 고문방지를 위하여 맹렬히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로 유엔에 협의자격이 있으며 이외에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아프리카인권위원회에는 옵저버 자격이 있다. 이 단체가 그동안 한 가장 큰 업적으로는 유럽고문방지조약을 드래프트하여 조약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단체의 유엔 및 아시아담당자인 세실리아 지메네스(Cecilia Jimenes)와 홍보담당자인 프란시스 히켈(Francis Hickel)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세실리아는 필리핀의 법률가로 이미 한국도 방문한 적이 있어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이였고 프란시스 또한 아시아권에서 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우리와 앞으로 연대하여 고문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도 이에 화답하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1시경부터 있던 런치브리핑이었다. 우리는 FIDH의 도움으로 사전에 인권위원들에 대하여 런치브리핑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하고 우리는 위원들이 모로코에 대한 오전검토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아래층의 빈방에서 위원들을 기다렸다. 몇 명이나 올까. 시간이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억나는 대로 열거하면 프랑스의 샤네 여사, 미국의 헨킨, 이스라엘의 크레츠머, 인도의 바그와티, 모리셔스의 랄라등을 비롯한 모두 8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요약문을 돌린 다음 내가 약간의 설명을 먼저 한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크레츠머는 이슈마다 질문을 하자고 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약문의 이슈를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 화제가 되었다. 위원들은 구금기간과 구금장소 그리고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였고 크레츠머는 특히 준법서약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인권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없었다. 뒤에 알고 보니 그는 이번 67차 회의에서 한국 담당(즉 그가 한국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에 대한 드래프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이었던 것이다. 물론 샤네 여사와 같이 왜 준법서약서가 문제인지,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그러냐고 물어볼

때 정말 무엇부터 설명하여야 할 지 막연하기도 하였다. 나는 그저 준법서약서는 사상범에만 요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국보법을 지키라는 것이므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하였다. 이외에도 그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가 규약 9조3항(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판사에게로 인치되어야 한다)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국제법의 대가인 헨킨과 대법관인 바그와티는 국내 법과 규약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나의 설명에 관심을 갖고 규약과 충돌되는 국내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졌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이제까지 개인통보제도가 몇 건 인용되었으나 정부가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런치브리핑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나아가 브리핑 이후 복도나 회의장에서 만날 때 스스럼없이 인사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브리핑이 끝나고 바그와티 위원을 복도에서 만나 간단한 답소를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며 우리들이 없으면 위원들은 정부가 주는 정보 이외에는 거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며 NGO들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명함을 달라며 자신이 메리 로빈슨여사의 아시아 지역 어드바이서라고 하며 12월초에 한국에서 있을 인권교육 워크숍에 참가한다며 그 때 우리와 접촉을 하겠다고 하였다. 망외의 소득이었다.

21일의 일정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권위의 정부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입수하였다는 것이다(자료편 질문서 참고). 지난 7월 66차 회기에서 확정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 19항으로 구성된 질문서를 입수한 것인데 22일 정부가 어떤 답변을 할 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임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우리들은 이 질문서를 분석한 뒤 약 10여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답변을 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문건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를하여 “정부답변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라는 이름의 문건을 우리의 반박보고서 그리고 요약문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 냈다(자료편 영문자료 참고). 불과 2-3시간의 작업이었지만 발빠른 작업이었다. 나와 김변호사 모두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간 덕에 이 작업은 가능하였다. 김변호사가 마침 우리의 반박보고서 파일을 가져간 덕에 상당한 양의 내용도 간단히 파일에서 올려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추가정보가 내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는지....”

21일의 마지막 일정은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의 만찬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 만찬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20일 저녁 무렵 FIDH의 엘레니로부터 한국 대

사관에서 우리를 찾는다든 전갈이 왔다. 대사관이 어떻게 우리가 제네바에 와서 FIDH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알았을까. 신기한 일이었다. 뒤에 알고보니 대사관측에서는 우리의 숙소를 알기 위해 민변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FIDH를 알아낸 다음 그 쪽과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대사관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리라. 우리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일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초대에 응하기로 하였다.

레만호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대사의 공관은 자리잡고 있었다. 20여년 전에 노신 영씨가 대사로 있을 때 구입하였다는 데 운치있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장만순 대사와 김종훈 공사 그리고 다음 날의 한국대표 전원이 참석하였다. 한식 코스 요리로 저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는 비교적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정부대표들에게 이번의 검토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나 공식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만찬 중의 느낌은 법무부와 외교부와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국제적인 관계나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반해 외교부는 대내적인 한계 때문에 대외적인 의무를 쉽게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거의 조율되지 않고 국제회의에서 노출된다면 큰일이 아닌가 내심 걱정이 되었다.

4. 67차 회의의 안건과 전반적 상황

현재 자유권규약에는 14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95개국이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를 수락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해당 정부에 위원회의 견해를 권고한다. 이번 회기도 바로 그와 같은 토대 위에서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가 검토된 것이다.

이번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6개국으로부터 제출된 인권보고서를 검토되었다. 10월 19일에는 노루웨의(4차보고서)가, 20일에는 모로코(4차보고서)가, 22일에는 한국(2차보고서)이, 25일에는 마카우(4차보고서)에 대한 포르투갈의 보고서가, 25일에는 카메룬(3차보고서)이, 그리고 11월 1일에는 홍콩(5차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보고서가 각각 검토되었다. 검토방법은 먼저 당사국이 자신들의 보고서를 설명하고 이어 정부대표와 위원들간에 서면질문(이미 지난 회기에 각국에 송부되었음)과 즉석 질문을 통하여 문답이 오고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11월 5일 회기는 전부 끝나고 위원회는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론을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5. 한국보고서 검토과정정보고(10월 22일)

10월 22일 10시 제네바 유엔본부 룸11에서는 한국보고서가 검토되었다.

한국정부대표

검토회의 참석한 한국의 정부대표는 공식적으로는 대표부의 장만순 대사를 포함하여 6명이 있었는데(별첨 한국정부대표 명단 참고, 안호영 참사관은 대표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날 참석은 하지 않았음) 장대사는 오프닝스피치만 하고 다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김종훈 공사를 비롯한 5인의 대표가 답변에 나섰다.

인권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18명인데(위원 명단은 별첨 참고) 이날 검토회의에는 콜롬비아의 폼보(Gaitan De Pombo) 위원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장은 칠레의 퀴로가(Medina Quiroga)였다.

진행방법

진행은 먼저 정부대표 장만순 대사가 정부보고의 대강을 약 15분간에 걸쳐 준비된 원고로 설명하였다(별첨 오프닝연설문 참고). 그런 다음 66차 회기에서 한국정부에 보낸 서면질문서(별첨 서면질문서 참고)에 대한 정부대표들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다. 19개의 서면질문사항 중 오전 회의에서는 11개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들 답변과 관련된 위원들의 구두질문이 있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의 위원들의 구두질문에 대하여 정부대표가 답변을 하고 이어 나머지 질문사항인 8개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 그런 다음 이와 관련된 위원들의 구두질문이 이어졌고 오후 6시경 의장의 마지막 코멘트(이것을 preliminary observations 이라고 함)가 있는 다음 폐회되었다.

질문과 응답의 내용

장만순 대사의 오프닝 스피치

장대사는 우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장하는 데 주력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1.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 (1) 분단국가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국보법을 간단하게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전향적인 개정을 할 용의가 있다.
- (2)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98년과 99년 사이에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3가지의 지침을 정했으며 그 결과 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국보법 위반사범은 12.3% 감소하였으며 구

속자는 27.5% 감소하였다.

2. 사상전향제도 폐지에 관하여

(1)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상전향제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준범서약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신념이나 의견을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라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산다는 서약을 의미한다.

(2) 이 제도는 석방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올 8.15 특사에서는 49명의 국보법사범이 준범서약을 하지 않고 석방되었다.

3. 고문 혹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하여

(1)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5년에 형소법이 개정되어 검사는 한달에 한번 이상 모든 수사기관의 구금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2) 더욱 정부는 고문방지의 목적을 대내외에 선언할 목적으로 95년에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3) 신정부 이후 정부는 주요정책목표로서 수사절차에서의 고문의 근절을 정하고 자백에 의한 수사를 지양하고 유전자감식등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4) 국가정보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94년의 법개정을 통해 정보요원에 의한 구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남용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한 상임위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

4. 재소자의 인권과 사법행정에 관하여

(1) 행형의 이상과 재소자의 인권의 향상을 위해 95년 행형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와 교육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고 9개의 징벌유형이 5개로 줄었다.

(2) 재소자와 가족간의 면회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98년 5월 이후에는 신문의 구독과 TV의 시청도 허용되고 있다.

(3) 99년 7월 이후에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이 허용되고 있고 5월 이후에는 기혼의 재소자를 위해 '부부만남의 집'이 만들어졌으며 귀휴제도도 행형성적이 좋은 사람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4)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인도차원에서 99년 2월 석방되었다.

5.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1) 정부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자율성에 기해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이는 비록 불법적인 파업이라도 폭력과 파괴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 많은 노동자들이 작년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폭력적으로 변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법의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최소의 사람들만을 체포하였다.

(3)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99년에 '교사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교사들의 노조가 가능해졌다.

6.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1)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자고용증진법등이 바로 그것이다

(2) 무자력자에 대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6년 6월 이후 종래 민사사건에 국한되었던 것을 형사사건으로 확대하였다.

- (3) 고용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98년 12월 ILO 협약 No.111에 가입하였다.
- (4) 그동안 외국인들의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왔던 외국인토지소유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들도 한국 영토 내에서 토지소유와 관하여는 한국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갖게 되었다.
7. 성차별에 관하여
- (1) 95년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본발전법이 만들어졌다.
- (2) 정부는 여성의 공직참여를 위해 할당제(target percentage, 공무원 채용시 매년 정해진 수의 여성을 채용하는 것)를 도입하였다. 이 수치는 올해 20%(96년에는 10%)로 올라갈 것이다.
- (3)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 (4) 사회의 모든 부분의 성평등을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이법에 저촉되면 구제절차가 제공된다.
- (5) 경제침체에 여성들의 빈곤과 가정불화등은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의 직업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들의 기업창업을 돕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제정되었다.
- (6) 97년에 국적법이 개정되어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남녀차별이 폐지되었다.
8. 사형에 관하여
- (1) 90년에 정부는 특가법과 특경법의 15개 조항의 사형을 폐지하였다. 9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5개 조항의 사형을 폐지하였다.
- (2) 계속적으로 사형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9.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 (1) 인권보호와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의 하나이었으며 현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 (2) 99년 3월에 정부법률안은 완성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10. 규약의 유보와 옹호에 관하여
- (1) 정부는 규약에 가입할 때 14조5항과 7항, 22조 및 23조4항을 유보하였으나 91년 3월에 23조4항을 철회하였고 93년 1월에 14조7항을 철회하였다.
- (2) 규약의 옹호를 위해 정부는 주요인권조약문을 번역하여 배포하고 인권관련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등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99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유엔 워크숍이 열린다.

인권위의 서면질의서 내용

서면질의서의 완전한 내용은 자료편 자료를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그 간단한 요지만을 정리한다.

규약의 지위

1. 인권침해사건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성에 의한 차별

2.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그 구제책은 무엇인가.
3. 남녀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및 선거직과 공직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여성이 가족계획을 위한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가.
사상 표현의 자유
5.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국보법으로 처벌된 사람들에 대하여 석방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준법서약이 있어야 국보법사범은 석방이 되는가. 국보법을 규약에 적합토록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6. 공연물의 사전검열의 근거를 설명하라.
고문으로부터 자유, 신체의 자유
7. 국가정보원과 고문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8. 재소자의 인권을 위한 독립적 조사장치가 있는가.
9. 80년대 말까지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10. 임의출석, 97년부터 시행하는 영장발부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형사사건에서 법률부조는 어떠한가.
11. 석방된 재소자에 대한 보안관찰제도를 설명하라.
사생활의 보호
12. 사적 대화와 전화도청(특히 정부에 의한)에 관한 법률과 현실을 설명하라.
집회결사의 자유
13.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조직한 파업관련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구속의 이유와 이것이 규약과 합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14. 노조의 구성과 파업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15.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느냐 여부가 경찰에 달려있는가. 집회와 시위를 제한받았을 때 사법부에 시정을 구할 수가 있는가.
차별
16. 공적 및 사적부문의 차별방지책은 무엇인가.
17.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경찰관에 의한 외국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선택의정서
18. 3개의 개인통보사건에서 정부는 그 구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규약의 교육 및 전파
19. 정부보고서에 대한 정보와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공무원과 교사, 판검사 및 경찰관에 대해서 규약을 전파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지 설명하라.

정부대표의 답변(오전회의)

세세한 답변 내용은 별첨의 원문 Summary Record를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이날 정부대표가 답변한 내용의 요지를 소개한다.

질문1에 대하여: 답변은 김종훈 공사가 하였다

(1)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권법이 99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이다. 법안은 유엔핸드북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하였다.

(2) 법안 심의 중 많은 의견이 표출되었는데 정부는 그것을 환영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다원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법안에서는 기구의 법적 성격을 민간법인의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기구체는 인사상 그리고 재정상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노력은 유엔핸드북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동기구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를 관장한다. 동기구의 기능으로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인권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권고 그리고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와 구제로 되어 있다. 동기구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즉 자료제출거부행위등은 형사범죄가 되며 미화 1만불 정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질문2-4에 대하여: 허강일 서기관이 답변하였다.

질문2에 대하여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97년에 두 개의 법을 만들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등의 피용자들은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 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9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케 하고 있는데 99년 8월 31일 현재 65개 상담소와 14개의 보호시설을 두고 있다. 그 예산은 미화 47만불 정도이다. 24시간 핫라인이 개설되었으며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동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질문3에 대하여

(1) 정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의 실시를 감독하고 있다. 97년에 여성발전기금이 설립되었는데 2002년까지 미화 7천만불을 모을 계획이다. 99년 1월에는 남녀차별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여성특위에서 성차별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정이나 권고 혹은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 새 정책은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98년의 지방자치선거에서는 108명 중 34명이 여성이었다. 공직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정책은 96년에 채택되었는데 99년 말까지 20%, 2002년까지 30%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99년 4월부터는 2000년까지 여성공직자들의 지위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때 김종훈 공사가 공직에서의 여성의 할당제 정책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 보충설명과 99년 1월에 만들어진 여성기업지원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질문4에 대하여

정부는 자발적인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고 99년에 피임을 위해 미화 456,000불을 지불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피임기구의 공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김종훈 공사가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적극적인 가족계획으로 60년대 3.01%에서 최근 0.95%로 감소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질문5에 대하여: 황윤성 검사가 답변하였다.

(1) 황검사는 초반에 국가보안법이 왜 한국인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1945년의 해방과 그에 이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설명하며 남북한이 셀 수 없는 분쟁을 계속하여 왔음을 들었다.

(2) 김대통령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사면을 발표하였다. 98년과 99년 정부는 255명의 국보법 위반자들을 석방하였고 32명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였다. 준변서약제는 사상전향제와는 달리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의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그것은 석방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3) 신중한 법적용으로 국보법 입건자의 수는 98년에 비하여 27.5% 감소하였고 기소는 53.6%로 감소하였다. 99년 10월 20일까지 117명이 입건되었고 그중 25명은 유죄확정되었고 92명은 아직 재판 중이다. 이들 숫자는 국보법이 제정된 이래 전기간에 대한 것이고 단지 규약가입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은 아니다.

(4) 인권단체에 의해 광범위하고 특정성이 없다고 특별히 비판되고 있는 국보법 7조는 현재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논의와 더불어 국보법의 신중한 적용은 현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질문 6에 대하여: 김종훈 공사가 답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97년에 공연법은 개정되어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 등급을 부여한다. 비등급 공연물도 일정한 공연관에서 상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질문 7-11에 대하여: 이성욱 검사가 답했다.

질문 7에 대하여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한 불법수사의 고발사건은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의해 다루어진다. 수사기관의 의한 직권남용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중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는 향후 모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다룰 수 있다.

질문 8에 대하여

(1) 행형시설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위해 검찰청에 접견실이 마련되어 있고 행형성적이 좋은 재소자는 전화사용도 가능하다. 가족과는 보다 긴 면회도 가능하며 신문과 TV의 시청도 허용된다. 정부는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수감착용을 제한하고 사복을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2) 행형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점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으며 재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밀봉된 청원서를 보낼 수 있다. 장관은 청원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질문 9에 대하여

80년의 5. 18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처벌되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사람들은 반역 및 뇌물수수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2년간 복역하였을 뿐 국민화합을 이유로 석방되었다.

질문 10에 대하여

- (1) 헌법 12조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행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로서 긴급체포의 경우는 사후영장이 가능하다. 체포구금된 피의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구속의 적부를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 (2) 이검사는 기소전 구금일수와 그 연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구속적부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답변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판사 앞에 인치되는 권리는 법률상 완전히 보장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크레츠머의 반론이 있다)
- (3) 이어 이검사는 우리의 경찰관집행법상의 임의동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질문 11에 대하여

이검사는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보안관찰법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안관찰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이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위원들의 의견 및 추가적 질문

위원들의 의견 및 질문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원문 Summary Record를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그 대강을 소개한다.

크레츠머(Kretmer)

- (1) 정부대표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방어하는 것에 대해 애석히 생각한다. 가입국의 국내법이 규약에 위반되느냐를 심사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의무이다. 정부대표의 답변은 한국이 국내법 적용에 있어 규약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나라들의 권리에 대해 다들 생각이 없다. 그러나 각국은 특정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국의 제한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확신할 수 없다.
- (2)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단지 어떠한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보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신정부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국보법이 진정하고도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은 규약 19조를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3) 정부대표는 고문방지를 위해 검사가 구금시설을 방문한다고 하난 국보법의 경우 30일 혹은 50일간 구금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문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구금된 자가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규약 9조 3항(체포된 모든 사람은 판사 앞으로 즉시 인치되어야 한다)와 합치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한국의 제도는 판사의 심리를 받지 않도록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 판사의 심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규약 9조 3항의 위반이다.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나. 한국의 NGO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이 때때로 어렵다는 데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안도(Ando)

- (1) 남북분단 상황을 잘 이해하며, 그러나 현정부의 햇빛 정책을 이야기 하며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음을 상기한다.
- (2) 첫째 질문은 규약과 국내법에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일용 규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 6조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은 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만일 규약가입 후의 규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 (3) 가족법에서의 남녀평등의 상황과 민법개정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알고싶다.
- (4)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크레츠머와 의견을 같이한다.

클라인(Klein)

- (1) 45년간 분단국가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그는 독일출신임) 한국의 분단현실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한국이)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계속되는 위협의 과소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국가의 그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최초보고서의 심의에서나 오늘의 심의에서의 핵심이다.
- (2) 정부대표는 국보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국보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 법은 아직도 많은 불투명한 개념 즉, 반국가단체, 국가기밀 혹은 잠입등을 간직하고 있다. 비록 국보법 사건수가 줄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수는 많다(1997년까지 674명이 국보법으로 유죄가 되었음). 영화, 책 그리고 이리저리한 말들이 그 법 아래에서 검열되며 정부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그와 같은 공격적 정책은 면책된다. 따라서 그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최소한 규약의 배경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 (3) 첫째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제한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적 장치는 무엇인가. 둘째, 민주제도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가 유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교육의 기간과 형식은 무엇인가. 셋째, 준법서약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소자 사이에서도 조차 차이가 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의도와 실제효과는 무엇인가.
- (4) 판사재임명제도는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의문시되는 제도이다.

랄라(Lallah)

최초보고서 검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인상적인 것이었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 정부의 규약의 지위에 대한 태도는 애매하다. 정부가 다른 인권규약(고문방지조약을 의미)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태도는 관심을 끄는 것이다. 국보법 7조가 규약 19조에 위반되는 중대한 침해(gross violation)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98년에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가 25%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표들은 93년에서 97년 사이에 구속자가 300%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누락하였다. 확실히 국보법은 지금도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다. 준법서약에 대해서는 클라인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사실 이 제도는 법률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를 범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판사의 재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클라인과 같은 의견이다.

에바트(Evatt)

(1) 국보법에 관하여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나는 질문 2, 3, 4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다.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제도는 남아선호사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별을 미리 알아 여아를 낙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남녀의 성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높은 낙태비율은 모성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정부는 낙태법을 엄격히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실질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2) 97년의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 예산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사건에서 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오로지 2-3개월이라는데 사실인가. 강간이 가정폭력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또한 아직도 강간범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가. 여자가 재혼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사실인가.

(3)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한국 여성들은 근로기준이나 평등고용기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성특위와 남녀차별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영할 만하나 위원회의 기능, 권한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에게의 접근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기존법률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비루스제프스키(Wieruszewski)

(1) 정부보고서와 다른 정보에 의하면 고문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아직도 완전히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검사에 의한 구금시설의 감독에는 국가정보원도 포함되는 것인가. 고문에 의한 증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93. 9. 28)은 환영하나 여기에서 피해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정보에 의하면 법원은 아주 명백한 고문의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고문주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2) 경찰청에 만들어졌다는 인권침해고발센터에서 과거 2년 동안 접수한 사건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처리결과는 무엇인가. 96년에서 98년 사이에 700건 이상의 위법처우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벌된 수사관의 수를 고려하면 아직도 법집행관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이 있는 듯 하다.

얄든(Yalden)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어느 정도인가. 위원회의 결정은 그 성격이 권고인가 아니면 행정적 명령인가. 그 관할은 군대나 국가안보기구에도 미치는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조치에 대하여 환영하나 이제까지 성취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위 설치에 아주 좋은 조치이나 독립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는가. 향후 국가인권위에서 여성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는가. 정부가 평등임금과 관련된 정책을 한 결과는 무엇인가. 재소자들의 이의절차를 위한 독립적인 절차가 있는가. 정부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청원제도를 말했지만 그것은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의 기구이다.

자키아(Zakhia)

누가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할 수 있는가. 공직과 대학 그리고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왜 여성의 국회에서의 정치참여가 쿼터제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NGO가 사건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면 한국의 인권보호는 강화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샤이닌(Scheinin)

(1) 정부대표는 박태훈 사건에 대해서 그가 유죄가 된 것은 규약을 배제하는 법 때문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로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입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명백히 국가보안법은 규약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2) 여성에게 성감별에 의해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규약 7조(고문 금지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러한 낙태행위를 규약 7조 위반이라는 입장에서 이문제를 보았는가.

(3) 고문고발은 수많은 사건 중 극히 일부이고 그럼에도 가해자는 거의 처벌이 안된다. 고문과 관련된 뿌리 깊은 문제는 아마도 한국 형사사법절차가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고문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자백배제 원칙을 기소 전의 공범자에게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4) 한국의 기소전 구금은 너무 길다. 규약 9조3항을 엄격하고 한 차원 넘게 적용하는 방법, 즉 판사가 정기적으로 피구금자를 볼 수 있고 의사나 변호사의 잦은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금시설과 수사기관등의 엄격한 분리는 고문방지를 위해 유용할 것이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재판이 열리는가 아니면 금지되는가.

(5) 사형에 관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고 현재의 분위기가 사형의 유예(moratorium)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

샤네(Chanet)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유보되었던 일부 규약조항의 철회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국보법은 규약 19조 뿐만 아니라 규약 9조도 위반한다.

(2) 한국의 기소전 구금일수는 너무 길다. 그 기간동안 피구금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변호사와 의사의 언제 처음으로 피구금자를 볼 수 있는가. 판사에게로 가서 심문받을 권리는 언제인가 그러한 권리는 고지되는가. 어떤 경우는 이러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한국은 규약 9조3항과 4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3) 클라인과 팔라의 판사재임명제도의 언급에 동의한다. 5명의 경찰관을 고발한 판사가 재임명에서 탈락하였다는 정보가 있는데 한국 정부에 규약 14조와 관련한 정보를 더 받고 싶다.

오후회의

바그와티(Bhagwati)

(1) 한국에서의 인권발전은 인정하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나의 첫 번째 관심은 헌법 111조(헌법재판소)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와 헌법소원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일반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위해 제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위반이나 규약위반이라고 제소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된 사건이 있는가.

(2) 두 번째 관심은 법관의 독립인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은 특별히 중요한데, 법관의 신분이 정치권력의 선심에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관심은 규약 14조 3항과 관련되는 것인데 한국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만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한다해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4) 네 번째 관심은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사람(손종규 사건으로 보임)이 위원회에 개인통보를 하여 위원회가 그의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 한국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5) 마지막으로 한국이 신분카드에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놀랍고 슬프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황윤성 검사: 국보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1) 국보법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람들이 누구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이다(황검사는 약 83%의 국보법 위반자들이 한총련 학생들이라고 말하고 한총련의 범법행위를 안기부에서 만든 홍보용 책자를 보여주며 그들의 과격성을 설명하였다. 96년의 연세대 점거사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폭력투쟁을 이야기하였으며 98년 대법원은 한총련의 중앙조직이 국보법 7조3항의 이적단체라고 선고하였다고 하였다).

(2) 준법서약은 지난 6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현 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여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결국 전향을 선언하는 제도는 없애고 대신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도입한 것이다.

(3) 위원들은 국보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법무부의 내부지침이 단지 행정부의 지침이므로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우려했는데 그말은 정확하다. 다만 사법부는 이미 국보법 적용에 있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국보법의 개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의 사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집권당은 연합정당인데 야당에 비하여 조금 의식이 많을 뿐이다. 그런데 야당은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전반적으로 국민들도 국보법 개정을 반대한다. 이런 것으로 보아 현정부의 국보법 적용을 남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중훈 공사

(1) 국보법에 대한 보충답변: 한 나라의 법령은 그 나라의 역사의 표현이다. 이러한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보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과격한 것 같고 오히려 그 법률의 특정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것이 7조이다. 정부대표로서는 국보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도 안되는(terrible) 법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법률에 대해 반대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민주사회의 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민법개정에 대하여: 민법 개정에서 세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호주제의 폐지의 여부, 이혼녀에 대하여 일정기간 금혼기간을 두는 것을 존속할 것인가 여부, 그리고 동성동본혼인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들 개정에서 절대로 개정할 수 없다는 반대

투쟁도 있었으나 이혼녀의 금혼기간은 이미 폐지되었고 호주제의 폐지는 아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동성동본금혼문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인데 때때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으로 구제해오고 있다.

(3) 출산과정에서의 성별불균형에 대하여: 낙태는 형법상 범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그것이 허용된다. 정부대표단을 조사하여보니(김공사를 포함한 이날 참석한 정부대표의 자녀들을 조사하였다는 말) 그러한 남녀성비의 불균형은 찾아볼 수 없다. 보통 아들선호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심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남아선호에서 오는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옳다. 정부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증액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남녀차별과 동등임금의 원칙 그리고 소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법률상 차별은 없지만 사실상의 차별도 정부는 방지할 의무가 있다. 영문으로 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 후에 위원회의 보고자에게 보내겠다.

(5) 위원회는 96년에 공직에서의 10% 여성할당이 이루어졌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외통부의 경우는 신규임용에서 이를 상회하는 20%였다. 법무부의 경우는 좀더 보수적이다. 명심할 것인 여성할당제는 법이 아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여성특위는 대단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가 남녀차별이라고 인정하면 의견을 낼 수 있고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고발)를 밟을 수가 있다. 위원회는 강간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냐고 질문하였는데 여기에 있는 검사 두사람의 견해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강간이 범죄행위가 되었다 사건은 알지 못한다.

이성욱 검사: 체포와 구금시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1) 변호인접견권은 법과 관행에 의해 보장되며 국보법 사건에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 검사는 한달에 한번 안기부를 방문한다. 안기부 건물은 국보법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안기부가 수사하는 국보법위반자들의 구금은 안기부 근처의 경찰서에서 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매월 경찰서들을 방문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요구할 때 하는 것이다. 99년에는 77%의 사람들이 적부심사를 요구하였다(필자가 듣기에는 이 경우 적부심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음. 이 검사는 위원들이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을 질문하였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모양임). 수사기관은 체포와 즉시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변호사회는 그날의 당직변호사를 지정한다. 피의자는 기소전에 30일 혹은 50일까지 구금될 수 있는데 검사는 어떤 시기라도 석방시킬 수 있다. 일단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는데 보석으로 석방될 수는 있다. 법무부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각급법원에 지시를 하였다.

(2) 고문에 의해 취득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관련 고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수사관들은 결코 처벌되지 않고 도망다닐 수가 없다. 95년과 98년 사이에 정부는 57건의 고문관련고소사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51건이 무혐의처분이 되었고 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한건은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되었다. 공범자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사 도중에 의사에 의한 관여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의자가 아픈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의사를 부를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그 시간 이후에 구금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금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형벌을 받은 경우 혹은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의 독립은 보장된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완전히 독립하여 일반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김중훈 공사

(1) 국가인권위는 군사당국이나 안보기관에 대해서도 권고를 발할 수 있다. 인권위는 권고만을 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인(과 그의 공범자)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서는 그 둘이 모두 사면을 받아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사형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나 그것이 언제일런지는 당분간 알 수 없다. 현재 약 30여명이 사형을 대기하고 있다. 최근, 특히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2) 정부대표는 헌법 37조2항이 규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지적을 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황윤성 검사

(1) 위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법관임명제도가 큰 관심인 것 같다. 판사의 기능과 역할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예비법관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합격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들은 2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연수과정이 끝날 때 쫓 그들의 성적과 지원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다. 한국에서는 법관의 직은 움직일 수 없다는 원칙은 그리 발달이 안되었다. 대신 재임명제도가 있는데 재임명에서 거절되는 일은 아주 희귀하다. 최근 정부는 3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 이러한 추천은 법원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임명제도에 대해서는 비정부기구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그것이 특정 법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우려는 근거없다.

(2)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6조가 헌법에 의해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법의 서열은 헌법을 필두로 법률, 대통령령, 부령등의 순이다. 국제조약도 그 서열에 있어서는 다양하여 전부를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없다. 국제법의 어떤 규정은 국가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개인이 그에 기해 직접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조약상의 각규정의 위치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의 법원에서 이문제를 판결한 사례는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대표는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성욱 검사: 질문 12에 대하여

(전반부에서 이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특히 긴급감청제도를 설명하였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편지나 전화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원에 의한 영장발부는 97년에 445건, 98년에 480건, 99년(1월-5월)에 124건이었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마약무기거래사건이었다. 98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불법의 도감청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고 정보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황윤성 검사: 질문 13-15에 대하여

(1) 한국 정부는 규약 22조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98년 1월 15일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났는데 그 목적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동위원회는 국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노사정위원회는 1차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도를 고려하기 위해 만났는데 99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제3차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1월에 다시 시작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가입과 파업에 관한 권리는 현저히 향상되었다. 97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 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강화하였다. 그 때까지 복수노조는 인정되지 않았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는 97년 2월 교원노조에 관한 모든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2차노사정위원회는 교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였다. 새법률은 99년 7월1일부터 교사들의 노조가입과 결성을 허용하였다. 1차노사정위원회는 98년 2월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우선 공무원들은 현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적절한 노조의 조직은 다음 단계이다. 공무원 협의회는 보건, 노동조건과 능률의 향상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관계법은 98년 2월 20일 채택되었고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협의회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이 가입할 수 있고 5급이상은 관리자로 취급된다.

(3) 노조간부의 체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노조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폭력을 수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처벌이 되었다. 한국의 파업은 곧잘 폭력과 불법적인 학교건물등의 점거 및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된다. 정부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파업이 폭력과 파괴를 수반한다면 법률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안에서 이를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

(4) 질문 15와 관련하여 옥외집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관할 경찰서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그 집회가 평화와 질서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때는 금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통지는 관할 상급 행정관청이나 법원에 이의를 할 수 있다.

김중훈 공사

(1) 질문 16에 대하여: 헌법은 평등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인권법에는 성, 종교, 나이, 사회적 배경, 인종, 피부색, 국적, 정치적 의견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질문 17에 대하여: 헌법 6조2항은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 이러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법무부 산하의 입국관련부서의 책임이다. 한국의 노동자와 외국노동자 사이에 평등이 보장된다는 법률은 없다. 9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허가는 단순노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98년 말 현재 16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불법노동자는 10만명 이상이다.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따라 고용에서의 평등문제는 많이 다르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불법노동자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할 수 있으나 보상을 받은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산업연수생들은 최대 3년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3) 질문 18에 대하여: 개인통보에서 위원회의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무죄가 판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근태나 박태운은 이제껏 재심도 보상신청도 하지 않았다. 손종규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3건의 개인통보사건의 결과를 번역하여 언론에 공표하였다. 제네바 대표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박태운 사건에 관하여 정보를 요구하여 하였을 때 손종규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실수는 시정될 것이다.

(4) 질문 19에 대하여: 정부보고서 12-14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추가로 말한다면 인권교육은 학교와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다.

인권위원들이 의견 및 추가적 질문

콜빌(Colville)

(1) 한국의 전자기술의 발전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인한 우려될 만한 상황이 그저 침묵한 채로 넘어갔다고 한다. 정부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위원회가 규약 17조에 관하여 발한 일반의견(No. 16)에 따라 한국정부는 위원회에 한국정부가 규약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정부의 컴퓨터망은 많은 개인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사적 기관에 의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잘못된 정보를 고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의 모델과 같이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개인의 정보의 보호는 필수적으로 형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하여 다음 보고서에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바란다.

(3) 정부대표는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이러한 것을 하는지 알고싶다. 나의 생각으로는 강간사건에 DNA 테스트를 하였으나 무죄가 된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4) 신분증에 지문을 찍는 관행에 대해 묻고 싶다. 이것은 사생활의 보호와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클라인(Klein)

(1) 주요도로에서의 시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금지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 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보고서 222항에 보고된 복수노조의 금지는 규약 22조에 위반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문제는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s)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 227에 의하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이것이 93년부터라는 것이 놀랍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다. 보고서 192항은 종교기관은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서 도대체 정치활동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교회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반

대할 수 없다는 것인가.

김종훈 공사

(1) 지문날인에 대하여: 지문날인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일본의 경우는 내국인과 일본에 사는 한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차별의 문제는 없다. 다음 보고서에 좀더 자세한 보고를 하겠다.

(2)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던 전자주민카드는 반대여론에 의해 포기되었다.

(3) 공무원과 판사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종교단체는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치활동은 금지되나 이것은 그 구성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황윤성 검사

(1)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주요공무원의 탄핵심사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관간의 권한쟁의를 심리한다.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다.³⁾

(2) 보고서 167항(피고인을 배제하고 증인신문하는 것)은 교호신문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위원은 지적하였는데 이 절차는 판사가 결정한다. 이런 사건은 대단히 희귀한데 보통 증인이 어린이이거나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3)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수사에서만 사용된다. 주요도로에서의 시위금지는 서울이 아주 인구가 많고 교통혼잡이 심하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금지가 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 지역은 매우 한정적이다.

(4)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한국은 이제까지 복수노조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집단협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의장의 마지막 코멘트⁴⁾

(1) 한국의 답변을 통해 인권의 신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재소자에 대한 징계의 완화나 여성의 권리신장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제정은 그러한 표시이다. 그동안 유보되었던 규약의 조항을 철회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고 조만간 아직 유보된 조항도 철회되길 바란다.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한다. (1) 무엇보다 국보법이 문제인데 정부대표는 한국정부가 이법을 개정하려고 하나 여론이 반대하고 이 법은 한국 사회와 역사의 반영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론은 결코 규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듣고자 한다(이미 위원회는 92년

3) 이부분은 바그와티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공식기록은 황윤성검사가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사실은 이성욱검사가 말한 것이다.

4) 이를 preliminary observations이라고 부른다.

에 권고를 한바 있지만). (2) 규약의 지위는 보고서 9항에서 표현된 것 같이 국내법 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견해로 보이지만 다른 정부기관은 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규약의 지위는 불투명하다. (3) 위원회는 고문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52건이 기소유예되거나 기소후 기각되었다는 것은 수사절차가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불충분하여 고문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규약 9조3항(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은 한국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4) 위원회는 보고서 167항에서 피고인이 배제될 때는 변호인마저 배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는 오해이었다. (5) 위원회는 판사의 임명절차에 있어서의 독립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6) 위원회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많은 법률이 통과되었음을 환영한다. 정부대표는 여론이 변화에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면에서 법무부의 여성할당제는 시사적이다. 아마도 정부기관 내에서도 여성할당을 반대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다. (7) 정부대표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37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질문은 어떻게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냐이다. 민주사회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하나 그것은 반드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금지의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8)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금지가 제거되길 바란다. 보고서 222항의 내용은 규약과 합치되지 않는다.

6. 정부답변의 평가⁵⁾

정부대표의 구성

이번의 대표단은 사실상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로 구성된 대표단이었다. 인권위원들의 구체적 질문 중 법률적 색채가 강한 것은 검사들이 답변하였지만 한계는 역력하였다. 특히 여성에 관한 각종 차별이 질문되었을 때는 답변이 법조문 이외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전문공무원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대표단의 전문성

정부대표가 국제인권법적 지식을 모르고 답변하다보면 질문과 답변이 겹도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회의의 질문 중에는 정부대표가 국제인권법적 지식이 없이는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 더욱 국제인권법적 지식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대표단중 누구에게서도 그런 지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컨대, 인권위원이 인권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물어 보았을 때, 그 취지는 국내법이 인권조약에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는데 답변은 영 판판이었다. 조약을 국내법과 같이 서열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초점이 아님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지막에는 조약은 국내법으로서는 바

5) 이번에 우리를 도왔던 FIDH의 관계자가 검토회의시 정부대표의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자료편의 Eleni Petroula의 코멘트를 참고

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국내적 입법수용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니나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인권규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소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는 것은 인권위원들로 하여금 한국대표가 규약의 지위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케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규약 9조3항(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누구나 판사에게로 즉시 인치되어야 한다)이 한국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정부대표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이 규약의 의미는 국가에 자동적인 의무(automatic obligation)를 지우는 규정으로 위원들은 우리의 영장실질심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대표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혼재하여 설명하며 우리가 규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 처럼 설명하였다. 이것은 규약이 우리의 제도, 즉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동시에 요구하며 전자는 정부의 자동적 의무로, 후자는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⁶⁾ 더욱 심각한 것은 때때로 우리 법제에 대한 전문성마저 없어 그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질문에 대한 사전연구 및 대표들간의 임무분담의 부족

대표단의 구성과 그 전문성의 부족도 문제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권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정부대표들이 얼마나 성실히 답변을 준비했는지도 의문이다. 서면질문서가 지난 7월달에 정부에 전달되었는데도 어느 답변을 보면서도 사전에 질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예컨대 개인통보사건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서에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인권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 답변의 수준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제를 해주지 못한 것이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기초가 안된 답변이었다. 우리의 법제상 재심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법제도이므로 적어도 성실한 답변이라면 현재의 우리 법제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향후 개인통보사건의 결과를 한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연구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불성실한 답변

6) 이러한 이유인지 법무부는 검토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회의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답변의 곳곳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발견되었다. 예컨대, 구금시설의 감사의 감찰과 관련하여 정부대표는 안기부도 그 감찰의 대상이 되어 한달에 한번 안기부의 시설을 감찰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의자단계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변호사회가 당직변호사를 임명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인권위원들로 하여금 마치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제도가 완벽한 것 처럼 오인케하는 것이었다. 현재 당직변호사제도는 전국적으로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제도는 전체구금사건의 극히 일부만을 커버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대표는 사법연수원등에서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법 강의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거의 허위의 답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다.⁷⁾

7. 67차 검토회의의 결과(최종 권고안)

11월 5일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치며 검토의견(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의견 중 서론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개한다(일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을 제외하면, 원문 대부분을 번역하였음).

규약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어려움

3. 위원회는 남북이 아무런 최종 합의도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안보관심사를 이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안보 관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진정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긍정적 요소

4. 위원회는 정부보고서가 NGO들 사이에서 전파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보고서의 검토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공연물의 사전검열에 책임있는 공연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같이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발견한다.

5. 위원회는 규약상의 권리(특히 규약 2조1항, 3조 및 26조)를 강화하는 많은 법률의 제정을 발견한다. 이들 법률들에는 여성기본발전법, 남녀차별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고용평등법의 개정등이 포함된다.

6. 위원회는 판사, 검사 및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에서 의무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규약의 전파를 위해 노력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인정한다. 또한 주요 인권조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파케 한 노력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7) 최근(99년 가을학기) 필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인권법 특강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원래가 재환 원장 시절 필자에게 국제인권법 강의를 요청하여 필자는 이를 준비한 바 있으나 최저 신청자수(10명)를 채우지 못해 폐강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

7.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국내법적 지위는 불투명하다. 이는 특히 한국 헌법이 이들 권리 모두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되는 권리의 범위와 범주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한국의 헌법 제6조(한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가 규약 비준 후 제정된 국내법이 규약상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8. 위원회는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가보안법의 지속적인 존속과 적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하면 국보법은 분단국가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보법이 규약 9조, 18조 및 19조를 포함한 규약상의 여러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특별한 구금원칙과 조사원칙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최초보고서 검토시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

9. 위원회는 국보법 제7조 상의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개인통보사건과 국보법 7조로 기소된 사건으로부터 판단하건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규약 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제한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약은 적과 우연히 표현이 일치하거나 적에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감찰의 내부적 지침(국보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 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보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규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보법 7조의 개정을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자세를 찬양하고 강조하는 법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이 종속적 지위에 있다는 가부장주의를 강화하고 반영한다. 태아 성별의 감별, 두 번째 및 세 번째 아이들 사이에서 여아가 차지하는 불균형 그리고 모성의 사망률은 심각한 문제이다. 위원회는 법 앞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권을 규정한 규약 3조 및 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것이 주류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

11. 가정폭력방지 및 처벌에 대해 정부가 한 새로운 입법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아직도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의 불충분함에 대하여 염려를 표시한다. 특히, 위원회는 강간행위가 여성에 의해 반항을 하였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을 위한 변명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부부간의 강간이 형사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을 규정한 새입법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존의 법규범을 폐지함으로써 강화해야 한다”

12.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와 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그리고 남녀사이의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우려한다.

“규약 3조 및 26조와 합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99년 1월 제정된 남녀차별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증진해야 하며 여성의 고용조건 및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13.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의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형사절차는 모든 형사 피구금자는 즉시 판사에 인치도어야 한다는 규약 9조3항과 합치되지 않는다.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반사건에서 30일, 국보법사건에서 50일)과 그러한 구금의 정당한 근거의 부족은 한국 정부의 규약 9조의 이행에 의문을 가져다 준다.

“한국 정부는 규약 9조가 제공하는 피구금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당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14. 위원회는 검사에 의한 구금시설의 감독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함을 우려한다. 고문등의 고소사건에서 적은 수의 사건에서만 관계공무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기존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규약 9조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과 수사기관과 법원의 피의자와 그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이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고문의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에서 언급한 형사절차의 개정은 지체되어서는 아니된다”

15.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준법서약제도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재소자가 서약을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결과와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위원회는 서약요구가 차별적 기초 위에서, 특히 국보법으로 유죄가 된 재소자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결국 그것은 재소자들로 하여금 규약과 합치되지 않는 법률을 지키겠다고 서약케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일부의 재소자들에게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6. 위원회는 보고서와 질문에 대한 정부대표의 답변만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특히 사법부 독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는 법관재임명제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7. 광범위한 도청은 규약 17조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부정확한 정보의 시정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 없고 그것의 오용이나 남용이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18. 수도(Capital)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의 금지는 일견 너무 막연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도로에서 있는 집회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이 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요구한다.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과 공무원들에게는 직장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사들과 다른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아직 남아 있는 제한들이 규약 22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우려를 표시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규약 22조 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약 23조 4항과 14조 7항의 유보철회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유보사항인 규약 14조5항과 22조에 대하여 그 철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1.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개인통보사건에서의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통보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이의나 금전배상을 위한 소송과 같은 국내소송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구제권고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이미 그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낸 국내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제3차보고서를 2003년 10월 3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CCPR/c/66/GUI)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본 최종견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와 차기 정부보고서가 한국에서 널리 전파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8. 67차 검토회의의 로비활동을 마치면서

이번 제네바 활동에 대한 대강의 보고를 마치며 결론으로서 유엔인권위에서의 향후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른 인권조약에 의한 유엔활동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1) 제대로 된 반박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보고서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용어와 시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지 한국 내에서 읽힐 수 있는 한국

어 인권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집필자들이 비록 영어로 직접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제인권법적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문제를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해하기 좋게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과정에서 NGO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걸린다.

반박보고서의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각 이슈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적 전거를 밝히는 것이 좋다. 규약의 관련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기존의 위원회의 일반의견이 나왔거나 개인통보제도의 견해(view)에서 이미 위원회가 유권적 해석을 내렸다면 이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도 유엔의 관련기관에서 결의형식이나 보고서의 형식으로 어떤 견해를 밝힌 것이 있다면 이를 인용하는 것도 좋다. 둘째,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인권이슈를 간단히 정리한다. 이것은 첫째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에서 이 이슈에 대하여 취하여 줄 내용을 정리한다. 한마디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향후 위원회가 정부에 대하여 발표할 권고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이와 같은 형식의 반박보고서는 98년 일본정부보고서가 검토될 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반박보고서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 다음 최종파트는 위원들이 검토회의에서 질문하여 줄 권고질문서와 검토회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어야 할 권고안 초고를 부치는 것이 좋다.

(2)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에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검토회의는 시간상 회기 전에 이미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문을 하기는 힘이 든다. 따라서 NGO가 원하는 주제가 검토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토회기 전 회기의 실무자그룹에서 서면질의서를 만들 때 적어도 NGO의 질문서가 들어가 반영되도록 로비하여야 한다.

(3) 제네바에 가기 전에는 반박보고서를 요약하여 이를 단 몇 장의 문건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요약문에서는 검토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과 권고 질문서 그리고 권고안 초안이 들어가 위원들이 반박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위원들이 정부대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의 로비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18명의 위원 중 반박보고서를 제대로 읽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로비활동을 하는 대표들로서는 위원들이 우리의 반박보고서를 이미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문제를 외국인이 알기 쉽게, 최소의 시간을 들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종단계의 로비에서는 바로 이 요약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네바에 도착하여 만나는 인권위원들마다 이 요약문을 전달하며 간단히 우리의 인권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준비할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이번의 로비활동에서 효과를 본 검토당일에 정부답변을 예상하여 간단히 NGO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도 유용하다. 회기 중 로비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입각하여 현지에서 간단히 문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로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위원들을 모아 놓고 직접 NGO의 대표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 런치브리핑은 가장 좋은 로비중의 하나임을 명심하자. 이보다 더 좋은 로비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제네바 로비활동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NGO대표들은 이 때 위원들에게 명확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시 반드시 위원들이 질문하여 줄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권고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도 직접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대부분 위원들은 이 시간을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인식한다.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위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자. 한시간 정도의 시간이나 핵심사항에 국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런치브리핑을 통하여 익힌 얼굴은 그 뒤 위원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 유엔건물의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인사하고 혹시나 구내식당에서 만난다면 같이 앉아 망외의 로비도 가능하다. 분위기가 이런 가능성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6) 국제적 NGO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활동은 우리와 같은 로컬NGO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적 NGO가 없으면 유엔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만들 수 없다(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Accreditation이라 함). 그리고 사전에 인권 고등판무관실이나 인권위원들 그리고 다른 국제적 NGO들과의 협조도 어려워지게 된다. 제네바로 떠나기 전에 국제적 NGO와 연결이 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주선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회기의 경우 만일 FIDH의 도움이 없었다면 원활한 로비활동은 힘이 들었을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이번에 알아 둔 APT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단체의 장점은 제네바가 본부이고 사무실이 바로 유엔본부의 옆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114/Add.1
20 August 1998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Addendum

THE REPUBLIC OF KOREA*

[2 October 1997]

* For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see CCPR/C/68/Add.12; for its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see CCPR/C/SR.1150, 1151 to 1154 and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or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40 (A/47/40), paras. 470-528.

CONTENTS

	<u>Paragraphs</u>	<u>Page</u>
Introduction	1 - 4	3
I. GENERAL COMMENTS	5 - 16	3
II. INDIVIDUAL ARTICLES OF THE COVENANT	17 - 254	6
Article 1	17 - 20	6
Article 2	21 - 33	6
Article 3	34 - 66	10
Article 4	67 - 70	17
Article 5	71 - 72	18
Article 6	73 - 89	18
Article 7	90 - 100	22
Article 8	101 - 105	24
Article 9	106 - 119	25
Article 10	120 - 144	28
Article 11	145	33
Article 12	146 - 150	33
Article 13	151 - 152	34
Article 14	153 - 174	34
Article 15	175 - 176	39
Article 16	177 - 178	40
Article 17	179 - 185	40
Article 18	186 - 194	42
Article 19	195 - 208	43
Article 20	209 - 212	46
Article 21	213 - 215	47
Article 22	216 - 227	48
Article 23	228 - 236	51
Article 24	237 - 248	52
Article 25	249 - 254	55
Article 26	255 - 256	56
Article 27	257 - 258	57

Introduction

1. In July 1991,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ts initial report pursuant to article 40, paragraph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examined the report in July 1992.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from States parties" and the Committee's discussions on the initial report, the Republic of Korea submits this second periodic report describing measures it has taken, mainly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to implement the Covenant in the five years following the initial reports submission. This report covers the period from July 1991 to July 1996.

2. One of the major chang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since the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ian Government in February 1993. The new Government, with the full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people, has taken various initiatives for reform and change.

3.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to promote human rights have provided for, among others, stringent rules governing detention, increased right to counsel, expanded legal assistance fo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extension of welfare entitlements for women and the handicapped. Continued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past few years to build a more democratic society committed to justi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y include: better promo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substantial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an integrated election act, and enhancement of economic fairn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Name System in the financial and real estate sectors. However, there remains more to be done to promote human right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striving continuously to improve the situation.

4. In aiming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report illustrate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lucidates the aspects to be strengthened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 GENERAL COMMENT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5.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under a presidential system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The National Assembly,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urt are vested with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respectively.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popularly elected representatives. As the sole legislative organ, it exercises its legislative power to protect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To prevent the abuse of executive powers,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impeach the President and other senior officials, to recommend the dismissal of the Prime Minister and others, and to inspect and investigate State affairs. The Administration implements the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akes all possibl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The Court

provides relief when the rights of the people have been infringed, and it is the ultimate guardian of the fundamental rights. A court judge rul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and according to his or her conscience. The status of a court judge is guaranteed by law.

6. The pres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the ruling body on constitutional petitions. Persons whose constitutional rights have been infringed through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s, may seek remedy from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has the authority to overturn unconstitutional laws, hence effectively discharging its role as the protector of fundamental rights.

7.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mposed of nine judges, who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from a list of eligible court judges. In order to maintai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Court, three of the nine judges ar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re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In order to allow a judg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his or her conscience, he or she is appointed for life, and may only be removed from office by impeachment or imprisonment.

8. Since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in September 1988 until June 1996,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67 laws unconstitutional. Of these, 43 have already been revised to reflect the Court's decisions; the remaining 24 laws, which are in the process of being revised, have been suspended by the relevant agencies. In addition, the Court revoked 34 non-indictment dispositions of the public prosecutor. A number of administrative measures have also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se decisions have furthered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The Covenant in relation to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9.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ovenant was ratified and promulgated by the Government in cons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the authority of domestic law without requiring additional legislation. Accordingly,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urt are obliged to observe the Covenant when exercising their powers. Most rights guaranteed by the Covenant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venant is to be respected, even if not direc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event that a law enacted prior to the Covenant's ratification conflicts with its provisions, the Covenant has greater authority. No law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encroach on the rights provided in the Covenant; any such law would be viewed as unconstitutional.

10. If a person files a suit citing encroachment of rights guaranteed by the Covenant, the Court is to rule primarily on the basis of domestic law corresponding to the Covenant. In the absence of relevant domestic law,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re to be invoked directly by the Court. In a

decision on a constitutional petition concerning whether the demand for a notice of apology aimed at regaining one's reputation infringes on an individual's freedom of consci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invoked directly the Covenant: "Article 18, paragraph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ovides that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or her freedom to have a belief of his or her choice" (Decision 89 HEONMA 160 of 4 April 1991).

11. At the time of the Covenant's ratif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reservations to article 14, paragraphs 5 and 7, article 22 and article 23, paragraph 4; but reservations to article 23, paragraph 4, were withdrawn on 15 March 1991 and reservations to article 14, paragraph 7, were retracted on 21 January 1993.

Advocacy of the Covenant

12. Since its accession to the Covenant and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the Government has exerted great efforts to inform its citizens of the contents of the Covenant. The Covenant has been widely publicized through "Law and Living", a booklet intended to familiarize all citizens with law in everyday life. This booklet includes the main contents of the Covenant and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reproduced therein. Annual circulation since 1992 is 100,000 copies.

13. The original text and Korean translation of 14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ere reproduced and distributed in February 1994 under the title, "Collected Material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is publication was followed in December 1995 by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volu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and Individual Petition", which explain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ndividual petition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 persons whose Covenant rights have been infringed. In addition, officials of all ranks engaged in human rights-related work, including those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the correction agency, are continuously educated so as to realize the ideals embodied in the Covenant.

14.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ll become part of the 1997 curriculum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ere public prosecutor and judiciary candidates, who have passed the bar examination, are trained for a period of two years before being conferred with their lawyers' licence and being appointed as public prosecutors or judges. Lectures will be offered on the main features of the Covenant as well as on remedies for individuals whose Covenant rights were infringed.

15. Moreover, the Ministry of Justice is launching a programme to bring law closer to everyday life: an outline of the Covenant is given at lectures and symposia, and the ideals of the Covenant are publicized when legal aid services are provided to resident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o those from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16. The Government organizes a Human Rights symposium every year around 10 December, the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iscussions were held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modern societies" in 1991, "Environmental problems and human rights" in 1992, "Industrial accidents and human rights of the handicapped" in 1993, "Victims of crimes and human rights" in 1994, and "Women and human rights" in 1995. These symposia played a great role in inspiring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I. INDIVIDUAL ARTICLES OF THE COVENANT

Article 1

17.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set forth in article 1 of the Covenant,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universal right applicable to all peoples regardless of race, religion, region, etc.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rticle 1 of the Covenant, the Republic of Korea has, as stated in the initial report, consistently recogniz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eamble and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ecla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ribute to world peace. These paragraphs also emphasize that the use of force shall not be tolerated to guarante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considers it the basis of its foreign policy to cooperate with various international and diplomatic efforts to help all peoples fully realiz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18.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s not onl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the right of persons forming a State to determine freely their own political status and to pursu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hold the right to express their thoughts freely and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through voluntary, fair, universal and confidential voting.

19. The Government is also activ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expedite the solution of the Palestinian question in relation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 subject of much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pledged in April 1994 a contribution of US\$ 12 million. Consequ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provide US\$ 10 million in the form of a soft loan of the Korean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US\$ 21 million in grants-in-aid. Furthermore, at the Paris ministerial conference on Palestinian aid in January 1996,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dedicate an additional grant of US\$ 3 mill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contributed US\$ 100,000 to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also pleased to have played a part in the success of the worldwide effort to end the apartheid policy of South Africa, thus exercis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romotion of self-determin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ticle 2

21.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that every person is entitled

to non-discrimination regarding protection and guarantee of his or her rights. Specific types of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are mentioned as examples only, and discrimination due to other factors such as race, colour, language, political affiliation, etc. are to be avoide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due to political opinion is also guaranteed by article 19 (freedom of conscience), article 21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rticle 8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of the Constitution.

22.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article 11, other specific clauses in the Constitution provide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32,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workforce, stating that "working women shall not be subjected to unfair discrimination in terms of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ticle 36, paragraph 1, provid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all be entered into and sustained on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 In addition, article 41, paragraph 1, and article 67, paragraph 1, set forth equal rights in regard to ballots and elections, and article 31, paragraph 1,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The concept of ability in article 31, paragraph 1, is understood to mean the capabilities attached exclusively to a person and not to other removable conditions such as wealth or family background. Therefore, university admission based on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is allowed, whereas the use of other criteria such as wealth or family background is not.

23. In principl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pply equally to aliens. With the exceptions of voting rights and electoral eligibility, which clearly proceed on the assumption that a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venant rights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or sojourning temporarily within the territory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treated and protected equally as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24. Equal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re protected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specifically through the Labour Standards Act, the Basic Vocational Training Act, the Civil Code, the Handicapped Welfare Act, etc. As already mentioned in the previous report, various remedies are available in cases involving infringement of the above rights.

Enactment of the Basic Employment Policy Act and guarantee of equal rights

25. On 27 December 1993,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Basic Employment Policy Act, aimed at allowing every citizen to make full use of his or her talent and ability without fear of discrimination. Article 19 of the above Act states that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gender, belief, social status, region of origin, or educational affiliation, etc., in recruitment and employment". Furthermore, arrangements have been made to address employment inequality through specific provisions for women, senior citizens and the handicapped. With regard to employment of women, article 17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u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by expanding welfare facilities and enhancing and developing vocational ability, which ensure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and facilitate occupational adjustment to the work". As for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and the handicapped, article 16 states that "the State shall take the following necessary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the handicapped and other persons having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particularly under common conditions of the labour market: developing suitable occupational categories for their employ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kills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employment".

26. Meanwhile, the Government enacted the Senior Citizens Employment Promotion Act on 31 December 1991 in order to enhanc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and has been involved in providing information to senior citizens on job opportunities,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counselling.

27. Moreover,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the Handicapped Employment Promotion Act was made law on 31 January 1990. This Act prohibits all kind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volving the handicapped by providing that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in personnel decisions such as hiring, promotion, transfers, educational training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 is handicapped" (art. 4, para. 2). To guarantee equality through employment for the handicapped, it is provided that a minimum of 2 out of every 100 openings for open-competition employment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e filled by the handicapped (art. 34); and business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are required to employ more than 2 handicapped workers for every 100 members of their full-time workforce (art. 35).

Promotion of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through full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28. In January 1994,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was fully revised to increase the number of adequate possibilities in special education, which is tailored to individual abilities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Act also seeks qualitative enhancement of special edu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methods.

29. This Act charge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developing special education, namely through the creation of a master plan, the training of special education instructors,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rt. 3, para. 1). A Central Special Education Inspection Committee and Regional Special Education Inspection Committees have also been set up to review major special education-related issues (art. 4, para. 1).

30. In additio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are compulsory and free of charge for thos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Kindergarten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are to be provided free of charge with educational expenses to be borne or subsidiz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t. 5).

Legal aid for the underprivileged

31.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legal aid programme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who are unable to pursue legal means for personal damages due to unfamiliarity with the law or lack of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cover the cost of legal proceedings. These services include free legal consultations, assistance for litigation costs and free procuracy.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LAC), established on 1 September 1987, is operating with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budget. KLAC, working from its Seoul headquarters and 50 representative and branch offices nationwide, provides legal aid for civil action to farmers, fishermen, and workers with an average monthly income below 1 million won (approximately US\$ 1,200).

32. Legal aid services for civil action have shown the following results: legal consultation was given to 342,049 persons in 1993; 344,363 in 1994; and 365,142 in 1995. Litigation assistance was provided to 34,625 persons in 1993; 37,729 in 1994; and 47,658 in 1995. From 1 June 1996 onward, legal aid, which had been limited to civil offences, has been extended to criminal offence cases for farmers, fishermen, workers in financial need, small business owners, etc. given that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Constitutional Court's guarantee of equal rights

33. Through the following important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laws and administrative actions unconstitutional an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 Provision relating to rallie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ct (Decision 92 HEONMA 37 of 12 March 1992). Article 55-3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ct, which provides that a political party can hold speech rallies as a means of election campaigning for its candidates,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it gives rise to discrimination against independent candidates, thu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b) Provision on candidacy limitation in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Decision 95 HEONMA 172 of 12 June 1995). Article 53, paragraph 1, subparagraph 4, of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on candidacy limitation, prescribes that the general staff, including directors, or executive staff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leave office 90 days before election day. Namely, the Law does not distinguish high-level officers from mid-level staff who are not in a position to exercise influence over decisions of these institutions. The Court ruled this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public office, and therefor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c) Provision on billiard room "off-limits" signs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Act (Decision 92 HEONMA 80 of 13 May 1993).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require only billiard rooms to post signs reading "off-limits to persons under 18", inflict unreasonable

limitations on the scope of business of billiard rooms as compared to other sports facilities. This kind of arbitrary discrimination encroaches upon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Hence, it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 Disposi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Decision 90 HEONMA 183 of 16 September 1991). A public prosecutor may not drop a case without investigating important matters that would normally be investigated, because such an approach infringes on the basic rights guaranteed to the complainant, that is,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proceedings. Therefore, this privilege should be revoked as an improper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s.

Article 3

Enactment of the Basic Womens Development Act

34. On 30 December 1995,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Basic Women's Development Act. The aim of the Act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ls on gender equality through the enhancement of women's status in all spheres of life (i.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nd to secure a firm foundation for relevant policies.

35. The above Act was legislated in the interest of society and out of citizen awareness, which was renewed with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in September 1995. This law places responsibility 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ter alia*, for the extended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tics (art. 15); expansion of access to public office (art. 16); employment equality (art. 17); intensified protection for maternity (art. 18); intensified initiatives for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in homes, schools and society (arts. 19-21); increased welfare for women (art. 22); expansion of infant nursery facilities (art. 23); establishment of equal status in intra-family relations (art. 24);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art. 25); appreciation of domestic labour value (art. 26);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women's groups (art. 27); and reduc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mass media (art. 28). In addition, this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formulation of a five-year basic plan for the systematic pursuit of a policy on women; the inauguration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Improvement Committee to eliminate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Women's Development Fund to support women-rela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National plan for the promotion of women's status

36.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olicy on women into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eparate section on women's issues in its seventh Five-Year Plan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992-1996). Concrete policy objectives are also being suggested for the following sectors: education, employment, cultural and social activity, welfar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7. The Five-Year New Economic Plan also includes women's status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issues. The Basic Plan on Working Women's Welfare (1994-1997), set up as a follow-up to the Five-Year New Economic Plan,

promotes improvement in the status and welfare of women workers through comprehensive governmental effort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protection of maternity benefits and increased opportunities for finding jobs.

38. In addition, the following 10 priorities for the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were selected in October 1995 and are being pursued based on the discussions at the Beijing Conference:

- (a) Exten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ery facilities through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 (b) Introduction of after-school tutoring for children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 (c) Comprehensive provision of meal services at school;
- (d) Setting of target percentages for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office;
- (e) Introduction of an incentive scheme for public enterprises to employ women;
- (f) Establishment of a society-wide, burden-sharing system to defray the cost of maternity care, including:
 - (i) Assumption by the public sector of a share in wage compensation during maternity leave through social insurance, etc;
 - (ii) Expansion in the scope of workplaces granting subsidies for maternity leave;
- (g)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training system for female workers, including:
 - (i) Improved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t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levels;
 - (ii) Improved vocational education for women awaiting re-employment;
- (h) Creation of an information network for women, including:
 - (i)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centre for women;
 - (ii)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communication system among agencies related to women's issues;
- (i) Enactment of the Basic Women's Development Act;
- (j) Amelioration of gender-discriminative attitudes through mass media.

Reinforcement of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policy on women

39. In 1991, the Government greatly reinforced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the Minister of State in charge of gender policy. To ensure the overall coordination for policy on women, divisions for concerted action have been instituted in 38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the beginning of each year, the annual accomplishments and plans concerning policy on women are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State, and the drafting of laws or policies with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tus of women requires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tate.

40. As a m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 opinion regarding gender policy and to ensure reflection thereof in policy-making, a feedback mechanism, the "Voice of Equality", operates as a receiver of suggestions. Furthermore, control over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Office of the Minister of State, thereby reinforcing the link between research and gender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on Wome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deal with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men's interests and welfare.

Support for employment of women

41.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and stabilize job-related activities of married women, the Infant Nursery Act was enacted in January 1991. The expansion of nursery facilities, after-school tutoring for children, comprehensive provision of meal services at school and other supportive operations are being systematically administered.

42. To expand nursery operations, child-care facility requirements have been extended to establishments with over 300 women workers. The former limit was 500 women workers. During the three years from 1995 to 1997, 1,300 billion won (approx. US\$ 1.6 million) will have been invested to create 7,590 child-care facilities, thus raising the nursery accommodation rate to 95 per cent for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in need of government support. Business owners providing nursery facilities in the workplace are granted a partial subsidy on the expenses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Attempts are also being made to use religious institutions as nursery facilities.

43.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of December 1993 provides employment insurance as a financial incentive for enterprises that offer child-leave or arrange nursery facilities at the workplace. At present, the child-leave subsidy programme is being applied to establishments with no less than 70 employees and will be extended to establishments with no less than 50 employees by 1998.

44. The Government fully supports devising and applying appropriate work styles for married women. Labour-related laws are being applied equally to domestic and part-time workers so as to ensure equitable working conditions. The "Guidelines Relating to Guarantee of Conditions for Part-time Workers" were formulated and have been applied since January 1992, as part of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regarding part-time workers. A special window for increased female employment opportunity for professional jobs is being operated in six local Labour Agencies nationwide.

45.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Basic Vocational Training Act provides that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shall be viewed as a priority". The Government places great emphasis on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Since 1995, 28,538 women have been educated i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Furthermore,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women established in October 1991 (Anseong Women'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was converted into a two-year technical college (Anseong Women's Technical College) in July 1994. As of May 1996, 450 women had been trained there in various fields such as fashion design, data processing, and electronic technology.

46. As a result of these policy efforts for equal employment rights and for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sector reached 48.3 per cent in 1995, a sharp rise from 39.3 per cent in 1970 and 42.8 per cent in 1980.

Revision of the Employment Equality Act

47. The Employment Equality Act, enacted in November 1987, was twice revised, once in 1989 and again in 1995. The Act substantially guarantees greater equal employment. The following is an outline of 1995's revisions:

(a) In recruiting or employing female workers, no employer shall present or demand any physical conditions not essential to carrying out their duties (art. 6);

(b) In determining criteria for work of the same value, the employer shall consider the opinion of employee representatives, including women employees (art. 6-2);

(c)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female employees in regard to financial remuneration, including family allowances or housing finances for employees (art. 6-3);

(d)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against female employees in training, assignment or promotion compared with any male worker solely based on considerations related to marriage, pregnancy or childbirth (art. 7);

(e) The spouse of a female worker may also apply for temporary leave of absence for post-natal care (art. 11);

(f) The Employment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was converted to the Employment Equality Committee to reinforce its functions, i.e. not only for coping with disputes on gender discrimination, but also for holding consultations on the employment of women and employment equality (art. 16).

48. Since the Employment Equality Act entered into effect, sexual discrimination systems and practices regarding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have continuously improved. But deep-rooted gender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social customs do not change easily. In order to eliminate

excessively conservative attitudes and customs and to promote the spirit of employment equality, the Government has proclaimed October of each year as Employment Equality Month. The goal is to raise peoples consciousness of employment equality through advocacy, seminars and campaigns. Meetings with owners of industrial corporations nationwide have also been held to heighten employer awareness of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policy.

49. The Employment Equality Act, as revised in 1995, has additionally prescribed penalties for acts that deny equal opportunity in recruiting and employing workers. Several companies, which published recruiting advertisements that limited applications to men only, have been sentenc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to a fine of 1 million won (approximately US\$ 1,200) due to violations of the above provision.

Measures for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office

50. The present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1993, is making effort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 Public Official Recruitment Quota System for women has been introduced to raise the ratio of successful women candidates; in open recruitment processes for public officials, women are recruited at increasing rates, moving toward the pre-determined goal of 20 per cent by the year 2000.

51. In addition, the "Guideline on Women Public Official Personnel Management" has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public officials in training, assignments, promotion or any other personnel matters. Separate training programmes and overseas study programmes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develop the capabilities of women officials.

Protection of women from violence

52. For thorough prevention of violent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female victims, the "Act Relating to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was instituted on 5 January 1994.

53.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the crime of rape is prosecuted only upon submission of a complaint; but the above-mentioned Special Act provides for prosecution without complaint of the rape victim if the assailant was carrying a weapon, acting jointly with one or more assailants, or attempting to rape or perpetrate indecent acts upon the handicapped. In addition, obscene acts committed using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the telephone and computer, are punishable under a new penalty clause. The Special Act also prescribes various measures to protect women victims during trial procedures.

54. Furthermore, counselling centres and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to allow women to physically recover, to regain mental stability and to restore a sense of security to their lives.

55. Women also benefit from certain protections with regard to means of resistance against acts of sexual violence. The Seoul High Court rendered a

decision that "the act of a woman, who had her clothes taken off and was in danger of being raped at night, and then stabbed her assailant to death by putting a knife in his right shoulder, may constitute excessive self-defence, but if committed by fear and shock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uch an act sh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Criminal Code" (Seoul High Court Decision 95 No. 2673 of 14 September 1995). Another decision demonstrates the inclination towards protecting women victims from sexual violence. By widening the scope of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the court granted leniency to a woman who killed the man who had sexually abused her. Leniency was granted because the woman had mentally suffered from habitual sexual violence.

56. With the activity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ppoin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has reached a new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the question of military sexual slavery. The Government is urg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unveil the historical truth regarding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ind solutions acceptable to the victims and the relevant NGOs.

Protection of women's economic rights

57. Economic valuation of household work is of great importance in many aspects, but policy has not properly reflected the potential income value of household work. Domestic labour by housewives has been undervalued. For example, they have received less compensation for accidental injuries in comparison with salaried workers. Yet, the situation has been improved through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58. The family law, as revised in 1990, has established a legal base for recogniz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t confirms joint responsibility of married couples for living expenses and in divorce proceedings, and validates wives' claims to a share of the family assets based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ir household work. The inheritance law, revised in December 1994, recognizes housewives' contributions of household work as a factor in the growth of assets. This is done by increasing the deductions from the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for spouses, and the scope of exemptions for bequests or gifts from spouses.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s being applied in tax laws and insurance-related regulations. For example, insurance benefits for housewives were upgraded in 1995.

Welfare policy for women in need of protection

59. The Mother-Child Welfare Act was legislated in April 1989 to enhance the welfare of single-mother households, most of which are underprivileged. At the end of 1994, 85.6 per cent of a total of 51,925 single-mother households received the following protection under the above Act: subsidies for educating and raising children, accommodations, support for moving into public permanent rental houses and loans for operating businesses. Homeless mother-child families are given priority for permanent, public rental homes. In case a single-mother household moves into a mother-child welfare facility, accommodations are guaranteed for three years, and a resettlement allowance is provided at the time of moving out.

60. To guide women involved in prostituti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ct, revised in January 1995,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institutions such as guidance and self-reliance facilities, national and local self-support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for expenses in operating these facilities (arts. 12 and 19).

61. To assist women in need of protection,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prostitution or who have run away from home, the Government is operating 128 Women's Welfare Consultation Centres nationwide. At these centres, 408 women welfare counsellors have been hired to counsel women in need of protection or advice on personal and family affair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consultations,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is provided in 21 guidance institutions for sound social rehabilitation of women requiring protection.

Women's political rights

62.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and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A woman's right to vote and to hold office are not limited, and relevant election laws do not restrict the above rights.

63. The percentage of women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the fifteenth term inaugurated on 30 May 1996, is higher than the 2 per cent of the fourteenth term, but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world average of 10 per cent. As for the June 1995 election of local councils, 71 women (i.e. 1.6 per cent of the total) were elected in the primary local councils at the Shi (city), Kun (county) and Ku (district) levels. In the greater local councils at the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levels, 55 members were women, representing 5.7 per cent of the total. These figures confirm the difficulties still facing women wishing to participate politically. However, 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ensur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was introduced in the revised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of April 1995. Since its enactment, women represent 42 of the 97 council members (43.3 per cent) from the greater administrative areas of the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ere election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used. Furthermore, 34.4 per cent of women candidates were successful in council elections in the primary administrative areas of Shi, Kun and Ku.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64. Reasons for low political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include, among others, a patriarchal tradition disfavours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 lack of social recognition of the capability of women politicians, lack of involvement among women themselves, and insufficient support from th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he constituency system has been pointed out as another disadvantage to women. Therefore, the Basic Women's Development Act of December 1995 provides th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xert

themselves through various methods to support increased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various measures in response to the above Act.

Endeavours for revision of the family law

65. The family law containing gender-discriminatory elements was completely revised in January 1990 and put into effect in January 1991. In response to complaints from some women's rights supporters that gender discrimination still remains, the Government assembled academic and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form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 Committee met 34 times from June 1993 to May 1996 to review the family law.

66. The main purpose of these present efforts is to revise articl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mandatory waiting period for remarriage (article 811 of the Civil Code), converting th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persons sharing the same surname and family origin (article 809 of the Civil Code) into a prohibition of marriage among immediate relatives, and abolishing the head of family system.

Article 4

67. It was already stated in the initial report that the Constitution confers on the President the right to issue emergency orders, to take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and to proclaim martial law (art. 76, paras. 1 and 2; art. 77, para. 1). Presidential emergency orders and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lose effect if approval is not obtain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s for martial law, the President must comply if the National Assembly, by a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all the members, decides that it should be lifted (art. 76, para. 4 and art. 77, para. 5).

68.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even when the freedom and the rights of citizens are restricted by law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public welfare, no essential aspect thereof shall be violated. This provision applies to the cas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face of emergency orders and proclaimed martial law. Therefore, freedom of belief, choice of religion, decisions of conscience, silence, research and creative work, etc. shall not be infringed upon for any reason, and any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a degree that would render such rights meaningless shall not be tolerated.

69.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permits only the necessary minimum actions in implementing financial and economic orders. As for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only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elabor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ovenant shall not be tolerated. As an additional note, martial law has never been proclaimed since the current Constitution entered into effect in 1987.

70. In the Republic of Korea, a presidential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was issued on 12 August 1993. The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Relating to the Use of Real Names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19 August 1993. The emergency order seeks the earliest possibl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real-name system, in particular, by preventing the circulation of illegal funds using alias, with the objective of eliminating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unearned income, speculation, etc. as a way of achieving justice in distribution. It therefore required prompt enforcement.

Article 5

71. The Republic of Korea in no way construes provisions of the Covenant in a manner that would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by the Covenant. Nor does it restrict rights and freedoms beyond the limits prescribed by the Covenant. This is guaranteed by the determ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develop as a free democracy. Human rights protection,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of powers,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re crucial aspects of this development.

72. In addition, as already pointed out in the initial report, fundamental human rights not provided under the Covenant but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be infringed or restricted for lack of reference thereto in the Covenant.

Article 6

Paragraph 1 - Right to life

73. It was observed in the initial report that the right to life is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human dignity of every citizen.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the right to life as a paramount, inalienable right. To protect individuals from violent crime and to prohibit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by individuals, the Criminal Code prescribes specific penalties for committing homicide in chapter XXIV (arts. 250-256).

74.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So as to protect both the lives of the unborn and those of children after birth, chapter XXVII of the Criminal Code prescribes a penalty for the crime of abortion. However, article 14 of the Mother-Child Health Act provides for exceptions on abortion. These exceptions are restricted to the following causes: pregnancy leading to severe injury or danger to the mother's health; dysgenic or genetic mental handicap; physical disease of the pregnant woman; pregnancy induced by rape or other crimes; pregnancy caused by incest. During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in 1995, views were expressed that its provisions establishing abortion as a crime should be abolished. But due to the absolute predominance of the national sentiment that the lives of unborn children must be protected under the right to life, the crime of abortion was retained in the revised Criminal Code.

75. Protection of pregnant women and infant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of pregnant women, to promote the delivery of healthy infants and to ensure proper infant care, the Mother-Child Health Act was enacted in May 1986. Mother-Child Health service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opera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gular medical examinations and vaccinations have been provided to pregnant women and infants, resulting in declines in the infant mortality rate.

76. Restrictions on the use of firearms by police officers. The use of firearms is severely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the potential deprivation of lives by arbitrary use of weapon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s may not harm persons by use of firearms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enumerated in article 11 of the Police Officer Duty Performance Act:

(a) A person believed, with sufficient reason, to have committed crimes punishable by death or by imprisonment from three years to life, is resisting arrest, escaping or being helped to escape by a third party, and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available but the use of firearms to intercept or arrest;

(b) A person is resisting, escaping or being helped to escape by a third party, thereby impeding execution of a warrant of detention or search and seizure, and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available but the use of firearms to intercept or to arrest;

(c) A criminal or insurrectionaries carrying dangerous items such as weapons, refuses at least three times to comply with police orders to abandon or surrender and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available but the use of firearms to intercept or to arrest;

(d) An armed agent is refusing to comply with orders from a police officer to surrender dur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e) In cases of self-defence or emergency evacuation prescribed by the Criminal Code.

Paragraph 2 - The death penalty system and crime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77. Sev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nd other special acts prescribe capital punishment as the most serious penalty. But crime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are restricted to flagrant crimes: crimes endanger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 such as insurrection (article 87 of the Criminal Code), inducement of foreign aggression (article 92 of the Criminal Code), espionage (article 98 of the Criminal Code); crimes depriving other persons of their lives, such as homicide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killing of lineal ascendants (article 25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Code), robbery with murder (article 338 of the Criminal Code); atrocious crimes destroying homes and families, such as special robbery with rape (article 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 Concerning Punishment of Crimes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death penalty is executed by hanging (article 66 of the Criminal Code).

78. Robbery and simple robbery with rape are not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s restricted to cases in which robbery is committed in combination with other crimes with destructive effects upon the lives and homes of individuals, for example, robbery with murder or

special robbery (robbery committed by trespassing upon a construction at night, accompanied by more than one person, or by being armed with a deadly weapon) and rape.

79.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Criminal Code and special penal acts, a number of objec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Consider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however, in which criminal syndicates are being organized to kidnap and murder innocent citizens and to regularly intrude into peaceful homes to rob, rape or commit other flagrant crime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eems premature. But in recognition of the cause and spirit of the Covenant and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human dignity,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to narrow the scope of crimes subject to capital punishment.

80. From this viewpoint, the Act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ed Crimes and the Act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ed Economic Crimes were revised on 31 December 1990 to remove the death penalty from 15 clauses including crimes of bribery, evasion of customs duties, etc. The revised Criminal Code, promulgated on 29 December 1995, has seen the deletion of the death penalty from five clauses, *inter alia*, inundation of residential structures leading to death or injury, obstruction of public traffic causing death or injury, obstruction of the use of public drinking water causing death or injury, and death resulting from robbery.

81. The death penalty is the most severe punishment within an allowable range prescribed by law. Penal servitude for life and for a shorter definite term are stipulated together with the death penalty, so that the death penalty can be rendered only in cases of flagrant crimes, while life imprisonment or penal servitude for a shorter definite term is the more common sentence on most occasions.

82.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ed the opinion on the death penalty that "from a humanitarian or religious viewpoint, institution of the death penalty leading to deprivation of invaluable lives should be avoided.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other invaluable lives assailed by crimes and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death penalty for the penal policy of the State cannot but be justly admitted. Therefore, article 338 of the Criminal Code (robbery and murder) stipulating death as a legal penalty is not considered to be unconstitutional" (Decision 87 DO 1458 of 8 September 1987). The Supreme Court thereby assented to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decisions to the same effect have been made in that context thereafter.

83.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the death penalty is the drastic punishment [of] causing permanent deprivation of a human life, and is the heaviest penalty applied only when continuation of that life cannot be tolerated; various factors should first be considered in ruling for the death penalty, namely, the motive, the form, the nature of the crime, the means and the degree of brutality of the criminal act, the gravity of its result, the number of victims, emotions/sentiments toward the injury, the criminal's age, prior convictions, the circumstances following commitment of the crime, the environment, education and the upbringing of the criminal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reflecting on all these factors the death penalty can

be pronounced (Decision 92 DO 1086 of 14 August 1992). A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wo constitutional petitions have been filed arguing that prescrip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rticle 338 of the Criminal Code is unconstitutional. Both were rejected for violation of the filing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petitions (Decision 89 HEONMA 36 of 25 November 1993, 90 HEONBA 13 of 29 December 1994).

84. As the information below indicates,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creased in 1995. This was due to an increase in the prosecution of flagrant, organized crimes, e.g. the crime syndicate "Jijonpa" run by six individuals including Kim Kih-Hwan, responsible for series of immoral crimes (i.e. kidnapping, murder, mutilation and incineration of victims).

Person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1991-1996)

Year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Jan.-June)
Final sentences	29	16	10	5	19	2
Executions	9	9	0	15	19	0

85. In 1991, seven death sentence appeals were reviewed, and none thereafter. All appeals were rejected.

86. As stated in the initial report, the death penalty is pronounced following a fair trial by an independent court, under due process of law, that is to say,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is presumed, the right to counsel is fully protected and the rights of appeal and to a retrial are strictly observed.

Paragraph 4 - Right to request amnesty and commutation of sentence

87. It has already been observed in the initial report that a person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may petition for amnesty or commutation under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right of petition), or articles 4, 6 and 7 of the Petition Act. The President may grant amnesty or commutation und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or articles 2, 3, 5 and 8 of the Amnesty Act.

88. Of all thos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one was granted amnesty and the sentences of 35 others were commuted between 1951 and 1990. Cases of amnesty or commutation have not occurred since 1991, owing to the fact that criminals sentenced to death in that period all committed the most flagrant crimes. The sentencing to the death penalty of those individuals received full support from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Paragraph 5 - Prohibition on execution of minors and pregnant women

89. As mentioned in the initial report,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o increase the minimum age for the death sentence from 16 to 18, and article 469 of the Penal Procedure Code prohibits execution of a pregnant woman.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nhumane treatment

90.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are categorically prohibit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Criminal Code, Penal Procedure Code and other relevant laws, as discussed in the initial report.

91.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s provided in article 1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 or herself in a criminal case." Confirmation of this principle can be found in articles 123, 124, and 125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4-2 of the Act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ed Crimes and article 198-2 of the Penal Procedure Code.

92. The revised Penal Procedure Code of 29 December 1995 obligates the prosecutor to inspect, more than once every month, not only the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but also confinement areas of every investigating bureau. If the prosecutor decides that any act of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has taken place, he or she can order the instant release of arrested or detained suspects, or transfer the case to the prosecutor's office.

93. Furthermore, article 12, paragraph 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when a confess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gainst a defendant's will due to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duly prolonged detention, deceit, etc., ... such a confession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nor shall a defendant be punished by reason of such a confession". Article 309 of the Penal Procedure Code stipulates, in addition to the disqualifying factors mentioned above, that a confession likely to have been extracted involuntarily may not be admitted as evidence. Therefore, it is guaranteed in respect of laws of evidence that torture and other acts of intimidation will not be inflicted upon the suspect.

94. Supreme Court decisions denying the proof value of confessions through torture, etc. have prohibited the use of torture. The Court's decision of 28 September 1993 (Decision 93 DO 1843) reflects this principle as it recounts as follows: "being under detention without a warrant for one and a half days, questioned by an investigator who was junior by 15 years, kneeling with knees bent and without sleep, would have caused deep humiliation and indignity and might have led to a loss of will to defend oneself. Accordingly, from the general circumstances of the confession, there exists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that the accused's confession was not voluntary and therefore can't be admissible as a valid evidence of conviction".

95. To prevent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ttention has been paid not only to legal or institutional systems,

but also to the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engaged in the judicial procedure. Therefore,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abuses has been emphasiz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each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branch office has contributed to educating 7,301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personnel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e. 12,076 persons) by offering them special human rights training during the year 1995.

96. In particular, investigating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re increasing their efforts to prevent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Also, as stated in the initial report, all necessary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by the appointment of a public prosecutor in charge of human rights affairs. In addition, the chief of investigation of each police station is appointed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educating investigative officers and inspecting detention cells in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This practice has been ongoing since January 1992.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Report Centre was established in the Superintendent's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May 1993. The Centre receives complaints and deals with human rights infringements such as violent or cruel acts during investigation.

Remedy for persons who have suffered from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97. Any person who has suffered from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while being detained by authorities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judicial authorities. In case the relevant illegal act is related to the scope of duty of a public official, the complainant may demand compensation from the State. Furthermore, the initial report already noted that if the public prosecutor takes a disposition of non-indictment, in disregard of cruel treatment during an investigation, the plaintiff may apply to the relevant court to rule on the prosecutor's decision and to reopen the case.

98. Some investigating agents were punished due to violent or cruel treatment against criminal suspects during the performance of duty.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in recent years is two for 1991, one for 1992, seven for 1993, and four for 1994.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99. As a means of proclaiming its goal of eradicating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and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ffort to ensure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took effect on 8 February 1995, following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9 January 1995. The initial report under the above Convention was submitted on 9 February 1996 and it described various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ng persons from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